환 경 부 고시 제2012-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 호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에 따른 '순환골재 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·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'(환경부 고시 제2010-67호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397호, 2010.6.21)를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12년 월 일환 경 부 장 관국토해양부장관

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·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

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·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·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

1.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

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	사용용도	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							
		2012년 12월	2013년 1월 1일부터	2014년 1월 1일부터	2015년 1월 1일부터	2016년 1월			
					2015년 12월 31일까지				
「도로법」 제2조 또는 제									
7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	도로보조								
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	기층용								

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		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						
	사용용도		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					
가.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.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 공사		31 <u>2</u> 7/21	2010 - 12 31 27 7	2014년 12월 31 277기	2013 0.12 1.2 2 1.7 1	15 ///		
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전용 도로,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	도로보조 기층용							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	도로보조 기층용							
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공사 중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가.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다.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다.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묘처리시설의 설치공사	기초다짐용 또는채움용 도로보조 기층용 도로보조 기층용	골재 소요량의 15%이상	골재 소요량의 25%이상	골재 소요량의 30%이상	골재 소요량의 35%이상	골재 소요량의 40%이상		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	도로보조 기층용							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	도로보조 기층용							
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	도로보조 기층용 도로보조							

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	사용용도	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							
		2012년 12월 31일 까지			2014년 1월 2014년 12월				2016년 1월 1일 이후
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	기층용								
「주차장법」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	표토용 또는 노반용								

2.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

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	사용용도	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적용기간						
					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			
「도로법」 제2조 또는 제 7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.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.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 공사	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							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전용 도로,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	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	제품 소요량의 15%이상	제품 소요량의 20%이상	제품 소요량의 25%이상	제품 소요량의 30%이상	제품 소요량의 40%이상		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	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							
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공사 중								

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	사용용도	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적용기간							
						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			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	아스팔트								
가.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	콘크리트								
관거의 설치공사	포장용								
나.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									
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									
다.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									
처리시설의 설치공사									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	아스팔트								
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	콘크리트								
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	포장용								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	아스팔트								
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	콘크리트								
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	포장용								
설치공사	700								
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	아스팔트								
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	콘크리트								
30만 제곱미터 이상인	포장용								
용지조성사업 개발 및 운									
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	아스팔트								
제2호 및 제6호에 따른									
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	콘크리트								
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	포장용								
	시고리드								
「주차장법」제2조제1호 가목	아스팔트								
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	콘크리트								
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	포장용								

- 3.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 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.
 - 가.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 골재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

- 나.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(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)
- 다.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
- 라.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한 경우

4. 행정사항

- 가. 시행일
 -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나.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
 -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.
- 다. 재검토기한
 -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8일까지로 한다.